

## [사 건 명] 행심 2014-19

###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10.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 ○○○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4. 10.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14. 10. 20.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나. 청구인은 2014. 10. 2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4. 11.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4. 10. 2.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2014. 10. 10.에야 조사를 시작하여 아이들의 기억이 많이 사라진 후까지 조사를 방치하고, 학교폭력 신고한 13일이 지난 2014. 10.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의 ■■■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것은 부당하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2014. 9. 30. ■■■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 ◆◆◆도 가담하여 폭행을 행사하여 두려워 도망쳤으나 ■■■ 일행이 반까지 찾아와 끌어내고, 부모님께 이르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2014. 10. 1. 점심시간에 양치컵을 들고 화장실로 가는데 ■■■와 ○○○이 화장실에 밀어 넣고, 일대 삼의 대치상황(청구인 대 ■■■, ○○○, ◆◆◆)에서 ■■■가 손을 내리쳐 양치컵을 떨어뜨리게 한 후 청구인의 배를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의 ■■■에 대한 폭력은 ■■■의 청구인에 대한 폭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2014. 10. 1. 담임교사에게 사안을 알리고, 2014. 10. 2. 담임교사와 상담했으며, 전담기구에서 연휴가 지난 2014. 10. 6. 부터 사안조사를 한 뒤 학교폭력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 나. 청구인은 피해자이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2014. 9. 30. 청구인과 ■■■가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청구인이 복도에 넘어져 있어서 서인혁이 청구인을 일으키자 청구인도 ■■■에게 발차기를 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청구인의 교실 뒷문에서도 청구인과 ■■■가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였으며, 2014. 10. 1. 화장실에서도 3학년 5반 2명, 3학년 6반 2명 동수의 상황에서 청구인도 ■■■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사용한 이상,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판 단

-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4. 9. 30. 김을 먹으며 3-5반 복도를 지나가다가 ■■■와 말다툼을 했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 일행이 3학년 6반 교실로 찾아와 뒷문에서도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 2) 청구인은 2014. 10. 1. 점심시간에 양치컵을 들고 화장실로 가던 중, ■■■를 만나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떨어진 양치컵을 주우려는 청구인을 ■■■가 발로 걷어차자, 청구인도 적극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였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 1)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오히려 ■■■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이고, 청구인의 ■■■에 대한 폭력은 ■■■의 청구인에 대한 폭행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이는 학폭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에 대한 행동은 비록

■■■가 먼저 유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에 대한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하고, ■■■가 다른 학생들과 사전 모의하여 청구인을 화장실로 데려간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과 같은 반 학생인 ◆◆◆의 권유로 화장실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화장실 안에서 청구인과 ■■■가 비슷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일방이 먼저 시비를 유발한 것인지 여부로 폭력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는, 피청구인이 2014. 10. 10.에야 조사를 시작하여 아이들의 기억이 많이 사라진 후까지 조사를 방치하고, 학교폭력 신고 후 13일이 지난 2014. 10. 15.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이므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고, 그중 가장 경한 처분인 『서면사과』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